

제조물 책임법에 관련된 국내 제품안전관련 규격의 현황

임현교

충북대학교 안전공학과

1. 서론

21 세기는 경제전쟁의 시대이다. 과거에는 국경이라는 물리적인 방법으로 자국의 국민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었지만, 최근 들어 그것은 의미가 없어졌다. 국제화·세계화 시대라는 이름에 걸맞게 서로의 왕래와 교역이 빈번하여, 폐쇄된 국가로서는 이제 존립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러한 시대에 선진각국은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이미 ‘제조물 책임 (Product Liability)’ 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법제화하고 활용 중에 있으나, 우리나라는 그 법규의 시행도 2002 년 7 월부터로 늦춰져 있고, 이에 대비하여야 할 생산업체들과 안전분야의 대응도 미흡하다. 이에 본 고찰에서는 선진국들의 제조물 책임규제현황과 경향을 살펴보고, 국내안전규격의 정리를 포함하는 안전분야 관계자의 대응방안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2. 제조물 책임법의 도입

2.1 제조물 책임의 개념

‘제조물 책임 (Product Liability)’ 이란 상품의 생산, 유통, 판매라고 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그 물건의 결함에 의하여 야기되는 생명, 신체, 재산권 및 기타의 권리에 대한 침해로부터 생긴 손해를, 제조자가 최종 소비자나 이용자, 혹은 제 3 자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2.2 제조물 책임법의 현황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이미 미국은 판례법을 중심으로 제조물 책임법이 과실책임 (negligence), 보증책임 (warranty), 엄격책임 (strict liability) 이라는 법리적 발전을 이루며 변화하여, 1970 년대에 들어 모델통일 제조물 책임법 (Model Uniform Product Liability Act ; MUPLA) 을 채택하기도 하였다. 또한, 유럽에서도 국제무역상의 법적

통일의 필요성과, 자유교역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1980년대 후반부터 제조물 책임법이 제정되었다.

이러한 추세는 1990년대 이후 개발도상국까지도 무역장벽과 관련하여 최대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엄격책임의 제조물 책임법이 제정되는 추세로서, 영국,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등의 영연방, 독일, 프랑스, 캐나다 등의 유럽선진국들과 중국, 일본, 필리핀 등의 아시아 국가들도 이미 1995년을 전후해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1982년 2월, 26명의 국회의원의 발의를 시작으로, 한국소비자보호원과 행정쇄신위원회에서 끊임없이 제조물 책임법의 제정을 요구해 왔으며, 마침내 1999년 12월 입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법률 제6,109호로, 2000년 1월 12일 공포되어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2.3 제조물 책임의 내용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조물”이란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말하며, 제조물이 1) 제조물의 외관, 2) 통상적으로 예견가능한 제조물의 사용, 3) 제조물이 유통된 시기의 제반사정 등을 고려하여, ‘사회 통념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결함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제조물 책임의 책임요건으로서의 결함은 그 발생과정을 중심으로 1) 제품개발이나 설계단계에서 발생하는 설계상의 결함, 2) 제조공정단계에서 발생하는 제조상의 결함, 3) 설명서나 경고의 단계에서 발생하는 표시상의 결함 등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2.4 제조물 책임의 주체

제조물 책임은 결함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자’의 책임을 의미하므로 우선은 제조물을 직접적으로 제조한 제조자가 제조물 책임의 책임주체에 해당한다. 그러나 그 외에도 수입업자와 판매업자·임대업자·리스업자, 운송업자·창고업자, 수리업자·설치업자, 공급자 등도 포함되므로 산업전반에 종사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3. 제품안전관련규격의 대응현황 및 문제점

제조물 책임법에 대한 대책으로는, 책임을 회피하는 제조물 책임 방어 (Product

Liability Defense ; PLD) 보다는, 제품안전 (Product Safety; PS) 을 성취함으로써 제조물 책임을 보장하는 제조물 책임 예방 (Product Liability Prevention ; PLP) 이 안전 측면에서 더욱 적극적이고 바람직한 대응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제품의 안전을 제품개발단계에서부터 검토하고 시기적절하게 위험성 감소대책을 구사하는 위험성 분석 (hazard analysis) 은 제품안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기술력에 있어서나 자금력에 있어서나 낙후되어 있는 국내 중소기업들이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자력으로 부응한다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관련기관과 안전관계자들의 적극적인 계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제조물 책임법을 법규상의 문제로 파악하여 법률전문가들만에 의한 해석이 시도되고 있다는 점이다. 제조물 책임을 올바르게 다루기 위해서는 전문적 법학분야와 이공학분야를 모두 다룰 수 있는 법공학적 시각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많은 벤처기업들과 관련기관들이 외국의 판례들만을 중심으로 법적 해석과 대응에 치우치고 있다.

둘째, 부분적으로 시도되고 있는 공학적 시도마저 신뢰도 공학 위주로 흐르고 있다. 최근 행정부가 나서서 기술지도를 할 의향은 보이고 있으나,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시험분석 및 신뢰성시험을 통하여 불량원인을 규명하고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것처럼, 지원기관조차 제품안전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

셋째, 기존의 공산품 안전관리 체계와의 연계가 시급하다. 예를 들어 우리 나라의 공산품 안전관리 체계는 품질경영촉진법에 의거, 공산품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비자의 생명, 신체상의 위해, 또는 재산상의 손해 등을 예방하고, 불량 저급공산품의 유통을 방지할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한편 전기용품에 대해서는 전기용품의 위해로부터 소비자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용품 안전관리제도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제조들은 차체에 제조물 책임법과 연관시켜 일관된 제도를 갖도록 국가가 기본틀을 제시하여야 한다.

넷째, 국내 대응규격들의 정비가 시급하다. KS 로 대응되는 우리 나라의 국가규격은 최초 도입당시부터 외국의 것을 모방하기에 급급하여 분류체계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보호안경 (KS P 8147), 송기 마스크 (KS P 8153), 방음 보호구 (KS P 8161), 주상 안전대 (KS P 8165) 등이 의료용구 시리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이해하기 곤란한 부분들이다.

4. 결론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국제화·세계화 시대에 따라 세계는 급변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조류를 따라잡지 못한다면 경제원리가 앞서서 무한경쟁의 시대를 헤쳐나가기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 이미 우리 나라는 공정안전관리 (Process Safety Management ; PSM) 제도를 도입할 때, 국제적 정보에 어두운 것이 기업에 얼마나 커다란 파급효과를 가져오며 얼마나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지 경험한 바 있다. 이러한 어리석음을 다시 반복하지 않으려면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선진국의 시행착오를 검토하고 장점을 살려 신중히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조물의 생산기술과 품질관리가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우 소송비용의 증가와 높은 배상금으로 인한 경영부담,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에 따른 소비자 가격의 상승 등 커다란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가 우려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1) 제조물의 안전성 향상, 2) 소비자 보호를 통한 고객만족도 향상, 3) 기업 경쟁력 강화, 4) 기업의 책임분담, 5) 사고재발의 방지 등 안전측면에서 보자면 긍정적인 부분이 더 많아, 안전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일조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국내에 안전관계법규는 많이 있으나, 실제로 제조물 책임법과 관련하여 무슨 법이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며, 어떤 분야에 더 많은 노력이 기울여져야 하는지 안전분야의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 [1] 宮村鐵夫, PL制度と製品安全技術, 朝倉書店, 1995.
- [2] 清水久二, 福田隆文, 機械安全工學—基礎理論と國際規格, 養賢堂, 2000.
- [3] 日本規格協會, JISハンドブック製品安全, 1997.
- [4] 日科技連PL編輯委員會 編, 製造物責任と製品安全, 日科技連, 1995.
- [5] W.Hammer, Product Safety Engineering and Management, 2nd ed., ASSE, 1993.